



3255 Wilshire Blvd., Suite 902
 Los Angeles, CA 90010
 (213) 389-2077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 TTY: (800) 735-2929
 www.mhas-la.org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비영리 단체.



공정 주거:
 바로 그 법!

이 달의 공정 주거 팁

팁 #6 – 정신 건강 장애인 보조 동물 또는 정서적 지원 동물?

세입자: “지금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많은 건물에는 애완동물 금지 규칙이 있어요. 저는 공황 발작을 돕기 위해 훈련받은 개를 기르고 있어요. 개는 제가 공격을 당하려 할 때 그것을 감지하고 제 무릎에 올라타거나 (앉아 있으면) 제 위로 올라와 저를 진정시켜 줍니다. 제 개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장애인 보조 동물인지 정서적 지원 동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에서 동물을 데리고 있기 위해 예정 집주인에게 공정한 편의 제공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개는 공황 발작을 감지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위에 올라와 앉는 것과 같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장애인 보조 동물입니다. 따라서 애완동물 금지 규칙과 관계없이 개를 아파트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과 지원 동물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보조 동물입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은 정신 건강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임무에는 주인에게 약을 먹으라고 상기시키는 것, 당뇨병에 걸린 주인에게 혈당이 높거나 낮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리고 주인에게 공황 발작을 알리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은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거나 증명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안을 주거나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동물로도 알려진 지원 동물은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동물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위안을 줍니다.

세입자는 공용 구역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장애인 보조 동물을 데려갈 수 있으며 몇 가지 제한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제약과 같은 보조 동물과 지내는 데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지원 동물과 관련하여 공정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주거 혜택을 누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규칙에서 필요한 예외 사항입니다. 집주인은 그 요청을 허가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과도한 부담”), 집주인의 사업의 성격을 바꾸거나 (“기본적 변경”),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상당한 재산 피해를 줄 경우에만 지원 동물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 집주인에게 가급적 날짜와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정신 건강 장애인 보조 동물이 있다고 알려십시오. 집주인은 다음의 두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리고 (2) 동물이 수행하도록 훈련된 장애 관련 임무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귀하의 장애에 대한 검증을 제공하고 개가 훈련받은 임무를 설명한다면, 집주인이 개가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상당한 재산 피해를 주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는 반드시 주택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귀하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할 경우, 지역 공정 주거 기관인 캘리포니아 평등 고용 주택부(DFEH) 또는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항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HUD 에 항의하려면 800-669-9777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 를 방문하십시오

DFEH 에 항의하려면 800-884-1684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dfeh.ca.gov/complaint-process/file-a-complaint/ 를 방문하십시오

공정 주거법은 다음 특성을 근거로 한 거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피부색, 성별, 가족 상태, 장애, 혼인 여부*, 혈통*, 성적 성향*, 성 정체성*, 성 표현*, 유전 정보*, 소득원.*

* 표시는 연방법에서 적용되지 않으나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대부분의 주거에 대해 시민권, 이민 상태, 기본 언어에 기반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지 사항: 이 달의 공정 주거 팁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적 자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질문이 있는 경우, MHAS, 지역 공정 주거 위원회 또는 직접 선택한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달의 공정 주거 팁 캠페인은 FHIP 보조금 #FE0119008 을 받고 주거 및 도시 개발부(HUD)에서 지원하는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본 자료에서 제시된 의견, 결과, 판단 또는 권고사항은 저자의 의견이며 HUD 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